

2015년 연수2동 종합감사 결과

감사목적

-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예산집행,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 공직기강 해이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I

감사 개요

☐ 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규칙
- 2015년도 감사·감찰 기본계획

☐ 감사기간 : 2015. 06. 22. ~ 06. 25. [4일간]

☐ 감사범위 : 2013. 06. 01일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중점감사 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 주민센터 운영 및 통·반장 관리 분야
- 복지행정서비스의 법규(지침) 준수 여부 및 지원관리 실태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 실태
- 민방위·공사분야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

☐ 감사처분 내역

처분요구						비 고
행정상 (7건)		재정상 (3건)			신분상	
시정	주의	추징 (1)	회수 (1)	환부 (1)		
4	3	20천원	110천원	10천원	—	

☐ 감사처분요구 목록

연 번	분야	지적사항	처분요구			비 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7건	2건		
1	예산·회계	보조사업 운영 및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10천원)		자율 방범대
2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절차 부적정	주의			
3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 관리 소홀	시정			
4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징수 및 신청관리 부적정	시정	환부 (10천원) 추징 (20천원)		
5	"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시정			
6	사회복지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업무 소홀	주의			
7	민 방 위	민방위 업무 부적정	주의			

- 이번 연수2동 종합감사는 예산회계,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동행정 전반에 대해 총 7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4, 주의3), 재정상 조치(추징 20천원/1건, 회수 110천원/1건, 환부 10천원/1건) 처분 요구함.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III

주요 지적사항

1

예산 회계

보조사업 운영 및 정산 부적정

○ 보조사업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고, 정산검사는 보조사업 시행 소관부서에서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은 다음해 1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 그러나,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보조금) 사업의 정산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계획상 목적용도와 다르게 보조사업비를 사용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반납) 110천원 】

2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강사채용 절차 부적정

○ 동장은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그러나,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는 강사 위촉과정에서 강사의 선발(또는 교체) 확정 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기타 사항으로 “공지”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심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한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의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음. **【 행정상 주의 】**

3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관리 소홀

○ 주민등록번호 부여시에는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생년월일·성별로 구분하여 수기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 그러나,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는 ○○○ 외 16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등재를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관리에 소홀함.

【 행정상 시정 】

○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용모변경 및 성명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자에게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며, 2006년 11월 1일부터 현행 주민등록증에 형광요소를 강화하여 위·변조 식별이 용이한 주민등록증으로 개선하여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면제를 규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강화에 따른 재발급처리지침

(민원지적과-14707, 2006.11.01)」

○ 그러나,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는 □□□ 외 1인에 대해 착오에 의한 수수료 비면제처리하고, △△△ 외 3명에 대해 수수료 징수 후 인증처리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관리에 소홀함.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부(10,000원) , 재정상 추징(20,000원) 】

○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송부하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습득된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통지 후 1년간 찾아가지 않거나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파기 처리하도록 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그러나, 연수2동에서는 ◇◇◇ 외 5명에 대하여 파기 및 회수처리, 교부처리 등 처리 사항을 정리하지 아니하는 등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업무에 소홀. **【 행정상 시정 】**

6**사회복지****복지대상자 가정방문 업무 소홀**

○ 정기계획에 의한 가정방문 실시 외 신규복지대상자 선정, 전입, 가구원 추가 등 가구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14일 이내 방문하여 생활실태 조사(자격관련 조사가 아닌 지원사항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 그러나,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는 2013년 6월부터 ~ 2013년 10월까지 신규선정 및 전입 기초생활 수급자 ○○○ 등 16명에 대해 선정(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복지대상자 모니터 업무를 소홀함.

【 행정상 주의 】**7****민 방 위****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 민방위 훈련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등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그러나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3개월이상 해외 여행 및 체류 중인 불참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3개월 이상 출국자로) 일괄 면제 조치하는 등 민방위 업무 처리에 소홀함.

【 행정상 주의 】

<찾아가는 사랑 나눔의 실천>

□ 추진목적

- 관내의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함

□ 추진내용

○ (찾아가는 건강배달부 사업)

- 지원대상: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
- 지원시기: 매월 첫 번째 목요일
- 지원방법: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한방의료서비스 무료 제공

○ (말벗도우미 사업)

- 지원대상: 관내 독거노인
- 지원시기: 매월 1회
- 지원방법: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소일거리(청소 및 설거지 등)를 거들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 (틈새계층 돕기)

- 지원대상: 관내 복지사각지대 세대
- 지원시기: 매월 1회
- 지원방법: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를 발굴하여 생필품 및 기저귀 지원

○ (찾아가는 생신 축하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관내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7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시기: 매월 1회
- 지원방법: 한국마사회 연수지점의 지원으로 관내 독거노인 세대 생신날 축하지원금(1인당 3만원) 및 특별후원금 지급

☐ 기대효과

-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